

# 운 리 경영 사 례 모 음

(주) 파 트 론

# 목 차

- ▶ 1. 선물 및 금품수수
- ▶ 2. 접대 및 협찬
- ▶ 3. 공정거래/주식매매
- ▶ 4. 경조사/정보보호
- ▶ 5. 회사자산보호/윤리규범준수
- ▶ 6. 내부신고제도/윤리적 기업문화

# 1. 선물과 금품수수

- ▶ 1. 윤리규범상에서 “선물”의 정의
- ▶ 2. 윤리규범에 어긋나지 않는 선물의 한도
- ▶ 3. 기업 홍보용 고객사 선물 증정
- ▶ 4. 업무관련 고객의 비금전 선물 수령
- ▶ 5. 거래처의 명절선물
- ▶ 6. 거래처의 금품수수

## 1. 윤리규범상에서 “선물”의 정의

Q. 나윤리 사원은 근무하면서 선물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선물을 받을때 마다 받아도 되는 것인지 고민이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본인은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받는 것이 뇌물일 수도 있고, 윤리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이 될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윤리규범을 살펴보니 ‘선물’에 대한 규제가 있는 것 같은데, ‘선물’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A. ‘선물’은 대가 없이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2. 윤리규범에 어긋나지 않는 선물의 한도

Q. 나윤리 사원은 최근 사내 전 직원 대상 윤리경영 강의를 듣고 사내 선물수수 허용범위를 처음 알게 되었다. 경조사에 대하여 5만 원 정도까지만 허용되고, 선물의 수수자가 공무원일 경우 그 기준이 3만 원 정도라고 한다. 나윤리 사원이 생각하기에 선물수수 허용범위가 현재의 경조사 문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낮게 책정되었다고 생각을 했다. 그렇다면 윤리경영이 정착되어 있는 외국 기업의 경우 선물의 한도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

A. 윤리규범에 대하여 처음 교육받는 사람의 반응 중 대부분이 선물수수의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낮다’ 라고 반응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소득이 높은 기업이나 국가일수록 경조사의 선물한도가 오히려 낮은 편이다. 미국의 경우 보통 25달러를 한도로 정하고 있으며 IBM은 심지어 한도를 10달러로 하고 있다.

물론 미국기업의 경우에는 50달러까지 허용하는 곳도 있어서 기업 간 차이가 있다. 그러나 통상적인 선물의 한도를 지키되, 선물의 금액만큼 중요한 것은 선물을 주고받는 의도가 순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 3. 기업 홍보용 고객사 선물 증정

Q. 매년 연례행사로 연말이 되면 모든 고객사 대표를 회사로 초청하여 ‘고객사 송년 간담회’ 를 개최하고 저녁 만찬 후 기념품을 모든 참석자에게 배포 하곤 한다.

이 경우 1년 간 거래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며, 앞으로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기념품 선물 (예, 20~30만 원 상당 물품)을 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한다. 특히 고객사 대표 전원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뇌물성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한다.

A. 회사의 특별한 기념일이나 회사의 회의에 참석한 인사의 격에 따라서는 고가의 선물이나 기념품을 주어야 할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사전에 회사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고 해당 선물에 회사 로고를 넣어 배포하면 문제가 안 될 수있다. 선물이 아무리 고가라 할지라도 다수의 고객사에게 동시에 배포하는 것이고 회사 기념품에 로고를 넣어서 현금화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다’ 라고 판단할 수있다.

#### 4. 업무관련 고객의 비금전 선물 수령

Q. 나투명 대리는 최근 주가 상승으로 큰 돈을 벌게 해 준 고객이 식사를 대접하며 고가의 골동품 시계를 선물하였다. 그 고객은 지금까지 고마워서 주는 선물이니 받아도 된다고 말했다. 나투명 대리는 골동품 시계라서 망설였지만, 현금도 아니고 그 고객이 번 돈의 아주 일부분이었으며 자신의 성과에 대한 보답이므로 받아도 된다고 생각했다.

A. 담당자가 직위를 남용하지 않고 고가의 골동품 시계를 받았다면 윤리규범에 위반되지 않는다.

하지만 담당자는 윤리규범을 위반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을 알고 있어야 한다.

실제로 선물 제공자에게 보답해야 한다고 느낀다면 선물을 거절해야 한다.

만일을 대비해서 선물을 받아도 되는지 여부를 상사와 의논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이다.

접대가 사업상 일반적인 관행이고 뇌물방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가성 있는 것이 아니더라도 고객과 거래할 때 오해의 여지가 있는 과도한 접대를 받아서는 안된다.

## 5. 거래처의 명절 선물

Q. 나윤리 사원은 오랫동안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에서 설날 선물로 과일 한상자를 받았다. 거래처 담당자는 전화를 걸어서 설날 선물은 그 회사가 거래하고 있는 모든 회사에 지급하는 것이며, 현금이나 상품권도 아니고 직원끼리 나눠 먹는 음식물이기 때문에 윤리강령에 위배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이런 경우 선물을 받아도 될지 고민이다.

A. 일반적으로 거래처로부터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공식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혹은 홍보용 물품만 해당된다. 아무리 거래처가 모든 거래기업에 과일선물을 배포하였고 현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거래처에서 설날 선물이란 이유로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경우 정중히 거절해야 한다.

또한 선물을 집에 배달해 놓고 가는 등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의 경우에도 사내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하고 가능하면 발신처에 선물을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 일부 발신처를 몰라서 반환이 어려운 경우 이를 모아서 정기적으로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기부를 하기도 한다. 물론 기업에 따라 처리방법이 다르다.

## 6. 거래처의 금품수수

Q. 나윤리 사원은 거래처와 간단한 식사 후 친목도모 차원에서 고스톱을 쳤는데 접대 고스톱 형식으로 본의 아니게 상당 금액을 취득하게 되었다. 이경우에도 금품수수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

거래처와 고스톱 등 직·간접으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는 근본적으로 해서는안 된다.

A. 최근에는 금품을 제공하는 수법이 다양화되어 접대 고스톱 형식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래처와 고스톱을 하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고스톱 뿐 만 아니라 당구, 카드, 골프 등 다른 모든 게임도 마찬가지다. 부득이한 경우 고스톱으로 취득한 금액에 대하여 크기에 상관없이 신고하여 거래처에 돌려주어야 한다



## 2. 접대 및 협찬

- ▶ 1. 거래처의 행사 참조
- ▶ 2. 거래처의 직원과 골프
- ▶ 3. 거래처와의 식사
- ▶ 4. 거래처의 식사 비용 부담
- ▶ 5. 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거래처 술 접대
- ▶ 6. 거래처의 술 접대
- ▶ 7. 거래처의 차량 무상 제공

## 1. 거래처의 행사 찬조

Q. 나윤리 사원이 속해 있는 팀은 체육대회, 등산 등이 있을 경우에 가끔 거래처로부터 찬조(음료수, 주류, 경품 등)를 받는 경우가 있다. 큰 액수의 현금이 오고가는 것도 아니고 서로 돕는 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이것도 윤리규범에 위반되는지 궁금하다.

A. 거래처로부터 찬조를 받는 것은 윤리규범에 위반된다.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거래처에서 먼저 찬조를 한 경우에도 나윤리 사원은 회사의 윤리경영 취지를 설명하고 되돌려 주어야 한다.

아무리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거래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고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찬조물품을 제공했다고 덤석 받는 것은 거래처 입장에서는 하나의 관행이라고 오해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 예산 범위 내에서 간소하게 행사를 치르는 관행을 정착시키고 특히 찬조를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래처에 얘기하여 부담을 주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

## 2. 거래처 직원과의 골프

Q. 김원칙 부장은 종종 거래처 직원들과 각자 비용을 부담하고 골프를 친다.

같이 운동을 하면서 최신 정보도 공유하고 네트워크도 쌓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적으로도 필요하다고 본다.

게다가 골프 비용에 대하여 각자 부담하기 때문에 윤리규범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맞는지 모르겠다.

A. 원칙적으로 임직원은 용역, 물품구매의 입찰 및 계약 등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직무 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골프 등 고가의 스포츠를 같이 하게 된 경우에는 사전에 윤리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 신고를 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김원칙 부장이 각자 부담으로 거래처 직원과 골프를 치는 것은 신고를 한다는 전제하에 무방하다고 할 수 있으나, 향후 업무수행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자제하는것이 바람직하다.



부장님.  
주말에 골프  
어때요?

거래처



좋치  
우선 윤리부서에 신고  
부터 하고

윤리부서



알고 있어요!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아시죠!

### 3. 거래처와의 식사

Q. 나윤리 사원이 근무하는 회사는 업무상 다수의 거래처가 있다. 이에 따라 업무 협의를 위하여 거래처 직원과 식사를 같이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거래처와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식사를 하면서 한번은 상대방이 계산하고 한번은 답례로 우리가 계산을 했는데 이런 것도 윤리방침에 어긋나는 것인지 모르겠다.

A. 식사를 접대 받을 때와 접대 할 때 그 규모가 통상적인 수준(일반적으로 5만원이내 권장)이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 4. 거래처의 식사비용 부담

Q. 나윤리 사원은 윤리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계약업체가 납품 후 인사로 조출하게 저녁식사를 하자고 초대하였으나 거절했다. 그런데 동료들과 회식하는 식당에서 우연히 거래업체 사장과 마주치게 되어 식사 잘하라고 인사하면서 말도 없이 먼저 계산하고 나가버렸다. 부서 전원이 참여하는 회식이다 보니 많은 비용이 나왔을 것 같은데, 우연히 발생한 일이고 사전에 몰랐기 때문에 윤리강령에는 위반되지 않아 보이지만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다.

A.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였다고 판단 될 경우, 나윤리 사원은 본인이 부담했어야 할 금액을 거래업체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그리고 업체 측에는 호의는 감사 하나 회사의 윤리규범을 준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알리면 상대방도 기분이 상하지 않을 것이다.

## 5. 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거래처 술 접대

Q. 나윤리 사원은 중요한 거래처 담당자와 식사 하면서 은근히 술을 한턱 사라는 눈치여서 상사와 사전 협의 후 유흥주점에 가서 접대를 하였다. 사업상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상사와 협의 후 한 행동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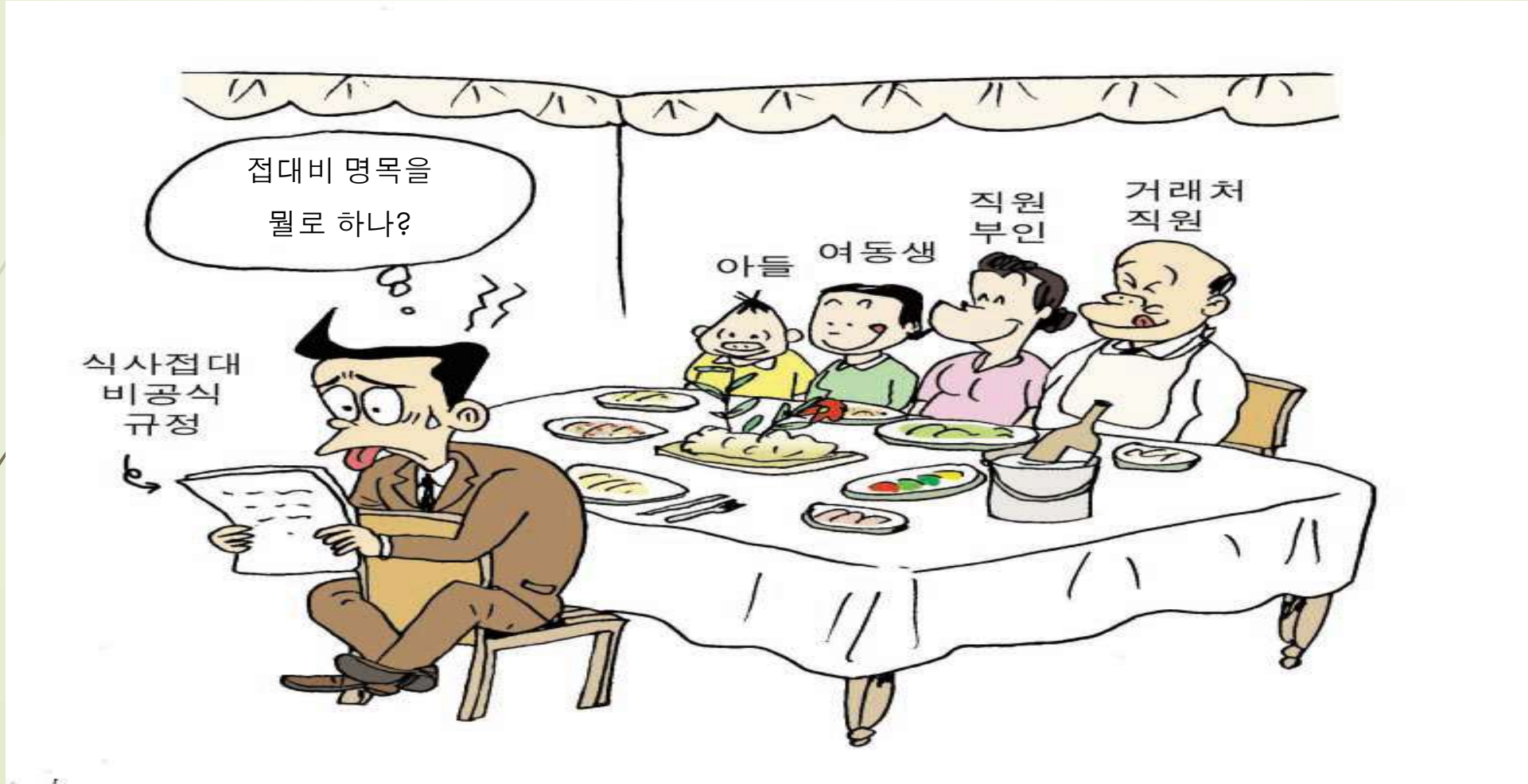
A. 유흥주점이라면 통상적 수준을 넘은 과도한 접대로 판단된다. 유흥주점까지 가서 접대할 필요성이 있는지 상사와 충분히 협의하고 윤리규범의 취지를 알려서 거절하도록 해야 한다.



## 6. 거래처의 술 접대

Q. 나윤리 사원은 거래처와 식사를 한 후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끔 2차로 단란주점, 나이트클럽에 초대받는 경우가 있다. 항상 그런 것도 아니고 같이 놀다보면 흥이 나서 그런 것인데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에 응하면 윤리규범에 위반되는 것인가.

A. 거래처로부터 2차 제의가 있는 경우에는 뿌리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겠지만 정중히 거절하여야 하며, 특히 유흥업소와 같은 고가의 접대를 받아서는 안된다. 그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고가의 접대비용은 반드시 접대 수혜자의 업무상 부담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꺼끄러워도 정중히 거절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옳은 선택인 셈이다.



## 7. 거래처의 차량 무상제공

Q. 나윤리 사원은 업무 관계로 거래처가 있는 부산까지 출장을 가게 되었다.

공항에 도착하고 보니 거래처 직원이 차량으로 마중을 나왔다. 윤리경영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하면 타지 말아야 할 것 같지만 거래처의 성의를 생각하면 타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A. 업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서 모든 참가자에게 제공되는 편의(교통, 숙박, 음식물, 기념품 등)는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다. 공항까지의 마중은 손님을 정중히 맞이하는 우리의 문화를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것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마중을 나오게 된다면 거래처에 부담이 될 것이다. 마중을 나오는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해와 당부를 구하는 것이 좋다.

### 3. 공정거래/주식매매

- ▶ 1. 거래처 선정에 대한 상사의 부당한 지시
- ▶ 2. 임직원의 자사 주식 거래 관련 규정
- ▶ 3. 업무상 취득한 정보 사용
- ▶ 4. 내부자 정보 제공
- ▶ 5. 거래처로 이직한 동료와의 관계

## 1. 거래처 선정에 대한 상사의 부당한 지시

Q. 나윤리 사원은 팀에서 필요한 물품을 평소 거래하는 A거래처부터 1천만원 에 구입할 예정이다.

그런데 오늘 점심시간에 김부패 차장이 평소에 잘 먹지 않던 고가의 회를 사주면서 물품을 B거래처로부터 1천2백만 원에 구입하는 방안을 생각해보라고 했다. 알고 보니 B거래처는 김부패 차장의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였다.

A거래처는 타 거래처와 비교를 해 봐도 품질과 가격이 적합하고 가장 합리적 방법으로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한 거래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사의 지시를 따라야 할지 고민된다.

A. 설사 팀장의 지시라 하더라도 B거래처의 물품을 구입해서는 안되며 계획대로 A거래처의 물품을 구입해야 한다.

팀장과의 대화를 통해 회사의 비용절감과 거래의 투명성 등의 이유를 들어 B거래처로부터의 물품구입은 회사의 방침과 맞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야 한다.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이해관계자의 물품, 용역을 합리적 근거 없이 상식적 수준 이상의 과대평가된 금액으로 구매하는 행위와 같은 부당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가 계속될 경우 윤리경영 담당부서와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보고 받은 윤리경영 담당부서는 임직원이 공정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 2. 임직원의 자사 주식 거래 관련 규정

Q. 나윤리 사원은 주택청약을 위하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증권을 매매하여 현금을 마련하려고 한다.  
아무런 제약 없이 매매가 가능할지 궁금하다.

A.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법인의 임직원은 그 법인의 주권 등을 매수(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당해 법인은 그 매매이익에 대하여 그 법인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기매매차익의 예외는 세제특례가 있는 증권저축(주식저축, 장기증권저축, 근로자 우대저축), 단주매매, 주식매수 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 등의 경우이다.

### 3. 업무상 취득한 정보사용

Q. 나윤리 사원은 업무수행 중 한 외국기업이 우리 기업에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처럼 직무와 관련하여 얻게 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투자를 하는 것은 괜찮을지 모르겠다.

A. 주식투자를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업무 중 알게 된 경영정보를 가지고 주식투자를 하는 것은 내부자 거래에 해당되어 불법이며 윤리규범에도 어긋난다.

## 4. 내부자 정보 제공

Q. 나윤리 사원이 거래하고 있는 상장법인인 거래처가 곧 합병되어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정보를 거래처 직원으로부터 알게 되었는데 윤리규범상 이는 내부자 거래에 해당하므로 주식거래를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이를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에게 알려주는 것도 불법인지 궁금하다.

A.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행위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거래를 돕는 행위를 하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내부자 미공개정보의 이용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등에도 금지되어 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자의 범위는 당해 법인의 임직원 및 대리인 뿐 만 아니라 주요 주주 또는 당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의 임직원도 포함되므로 해당기업이 당해업체와 거래관계를 맺고 있다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할 수 없으며, 또한 미공개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주어 투자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러한 증권거래법상의 의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되며, 당해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투자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된다.



## 5. 거래처로 이직한 동료와의 관계

Q. 나윤리 사원과 친하게 지내던 입사동기가 얼마 전 자신과 업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처로 이직하였다.

입사동기와 저녁식사 약속을 하였는데, 친한 친구이면서, 업무상 이해관계로도 관련이 돼 있어서 식사를 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다.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지 의문이다.

A. 자신의 건전한 상식과 양심에 비추어 보아 거리낄 것이 없다면 만나도 무방하다.

그러나 업무상 관계와 친구로서의 사적인 관계가 중복 된다면 업무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 4. 경조사/정보 보호

- ▶ 1. 거래처 경조사 공지
- ▶ 2. 거래처의 경조금
- ▶ 3. 거래처의 축전
- ▶ 4. 보고서 외부 유출
- ▶ 5. 정보 폐기
- ▶ 6. 정보 보안
- ▶ 7. 거래처와 정보공개 수준의 한계
- ▶ 8. 퇴사후 경쟁업체 재취업

## 1. 거래처 경조사 공지

- Q. 나윤리 사원은 오랫동안 모시고 있는 김원칙 부장의 경조사를 거래처 직원에게 알려야 할 지 고민이다.  
오랜 고심 끝에 만약 거래처 직원에게 귀뜸을 해주지 않으면 서운해 할 것 같아서 전해 주었다.
- A. 거래업체 등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에 대한 사항을 통지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신문, 방송을 통한 불특정 다수에 대한 통지는 가능하다.

## 2. 거래처의 경조금

Q. 김원칙 부장은 직무와 관련한 업체로부터 경조사 때 10만 원이 넘는 경조금을 받게 되었다.

돌려주면 상대방에서 성의를 무시한다고 생각할 것 같아 고민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A. 사회관습 상 경조사에 대해서는 관대한 입장이나 직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로 부터의 경조금 수수는 5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라도 10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조금은 공정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되므로 즉시 돌려 주어야 한다.



### 3. 거래처의 축전

Q. 나윤리 사원이 모시고 있는 김원칙 부장이 최근 승진하였다. 이를 축하하기 위해 거래처로부터 화분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인 축하인사라서 괜찮다고 생각한다. 이것도 윤리규범 위반에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A. 임직원은 거래처로부터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물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화분, 꽃바구니, 축전 정도는 인사로 받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화분의개수가 많거나 통상적인 수준 이상, 예를 들면 5만 원 이상의 고가라거나 쉽게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이라면 거절하거나 반송해야 한다. 부재중이거나 택배 등으로 받아 되돌려 줄 방법이 없다면 윤리담당부서에 신고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 4. 보고서 외부 유출

Q. 나윤리 사원은 이번에 작성한 회사의 사회공헌 통계 보고서를 사회공헌 담당 부서 및 이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서의 사람들에게 발송 하였다. 그런데 그 중 한 사람이 이 보고서를 외부로 유출시켜 물의를 일으키게 되었다. 보고서의 작성자는 나이지만 외부에 유출시킨 건 내가 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책임은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다

A. 만약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 업무 참고용으로 송부하였다면 1차 발송자의 책임은 없으나 업무와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까지 송부하여 문제가 발생 하였다면 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1차 발송자 에게도 책임이 있다.

## 5. 정보 폐기

Q. 나윤리 사원은 이번에 프로젝트를 끝내고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 캐비닛을 열었는데 여유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다. 캐비닛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들 중 일부를 버리기 위해 정리를 하던 중 2~3년 전의 오래된 보고서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파일을 임의로 폐기해도 괜찮은지 궁금하다.

A. 자료 폐기 시 상사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폐기하여야 하며, 특히 대리점 및 납품업체 선정 검토 등과 같은 의사결정과 관련한 정보는 무단으로 폐기 해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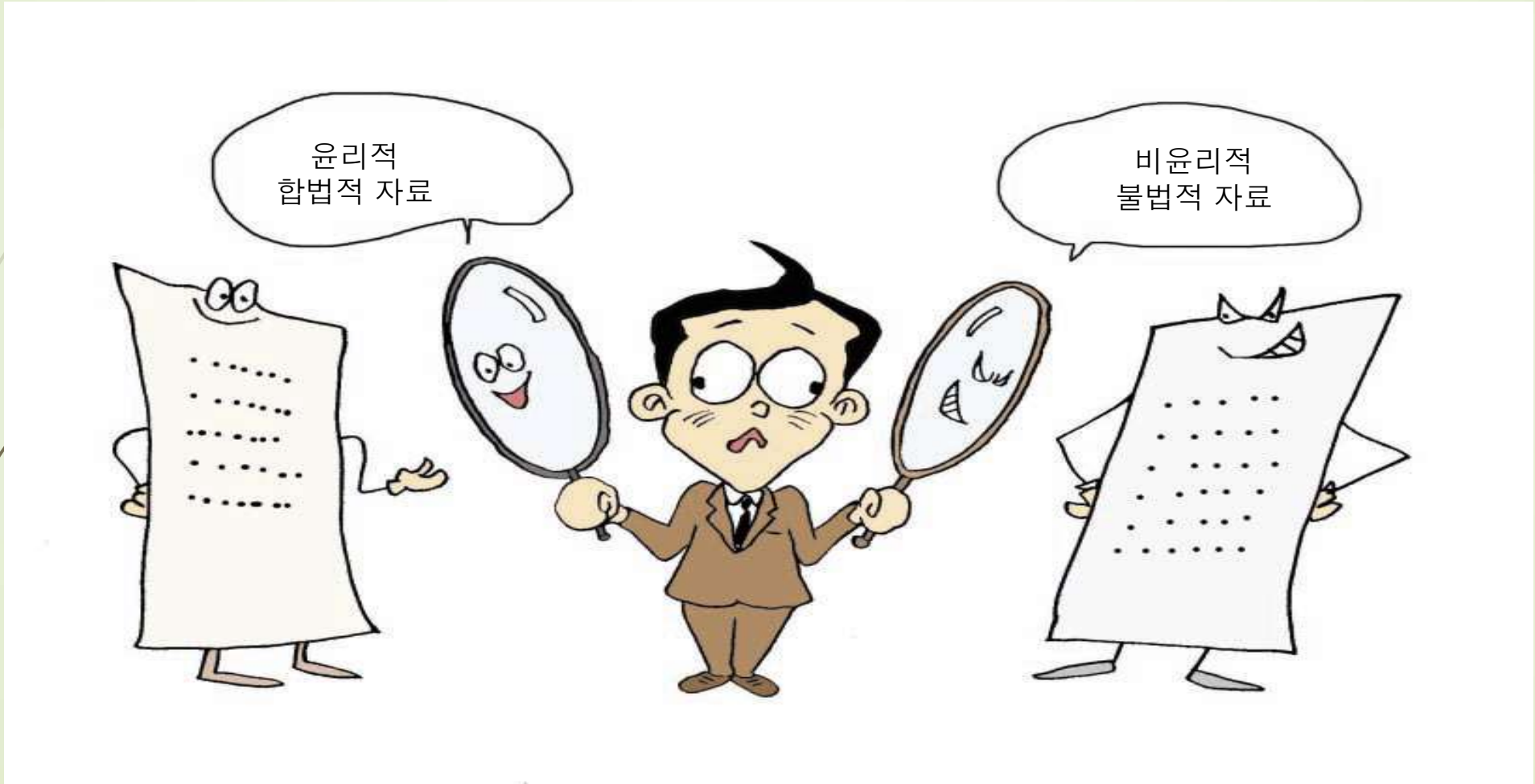
## 6. 정보 보안

Q. 나윤리 사원은 점심시간에 회사 인근 식당에서 동료들과 식사를 하면서 종종 회사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회사의 기밀 사항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회사의 중요한 정보에 대해 이야기 할 때도 많다.

가끔 이야기를 하면서도 혹시 누가 듣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될 때도 있다. 이러한 행동 역시 정보보안에 어긋나는 것인지 궁금하다.

A. 회사 근처의 인근 식당은 외부인에게는 정보 수집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평소 회사 외부에서는 사원증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회사의 영업비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 7. 거래처와 정보 공개 수준의 한계

Q. 나윤리 사원은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까지 영업 비밀을 보호 해야 하는 것이며, 어느 정도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것인지 그 기준과 원칙이 모호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 한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알고 싶다

A. 관련부서에 영업비밀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거래처에서 자사와의 거래를 위하여 꼭 필요한 정보가 아니면 제공할 필요가 없다.

## 8. 퇴사후 경쟁업체 재취업

Q. 나윤리 사원의 입사 동기가 얼마 전 퇴직 후 경쟁업체에 재취업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입사 초기 근로 서약서에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은 경쟁업체 취업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읽은 것 같은 기억이 난다.

이러한 행동은 윤리규범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A.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10조 1항)에 의거 회사는 근로자로 하여금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 하도록 하는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시 영업비밀 유지서 약서를 청구하므로 근로자는 서약서에 명시된 기간동안 경쟁업체에 취업금지 또는경쟁업종 창업이 제한된다.



## 5. 회사자산 보호/윤리규범 준수

- ▶ 1. 사무용품의 사적 사용
- ▶ 2. 통신장비의 사적 사용
- ▶ 3. 업무용 차량 사용
- ▶ 4. 업무용 항공 마일리지의 개인적 사용
- ▶ 5. 업무시간중 인터넷 게임
- ▶ 6. 윤리규범 준수 대상
- ▶ 7. 윤리규범 적용 대상
- ▶ 8. 고객에 대한 윤리 준수
- ▶ 9. 거래처 윤리 규범 위반 조치

## 1. 사무용품의 사적 사용

Q. 나윤리 사원은 이번에 고등학교 동창회장을 맡게 되었다. 처음 맡은 회장직이라 잘하고 싶은 마음에 동창회 모임 공지를 전체 회원에게 팩스로 보내려고 한다. 집에는 팩스가 없는 관계로 회사에서 팩스 공지를 보내다가 김원칙 부장에게 주의를 듣게 되었다.

나윤리 사원은 업무 시간이 끝나고 한 일인데 크게 잘못된 것 같지 않아 윤리강령을 꼼꼼히 읽어 보았다.

거기에는 회사의 예산이나 비품 등을 사용할 때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었다. 회사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용도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하다.

A. 회사의 용품은 업무와 관련된 용도에만 사용해야 한다. 예컨대 고교 동창을 만나 유흥업소에 가서 즐긴 후 그 비용을 회사의 접대비로 처리하거나 회사의 사무용품을 집에 가져가 자녀의 학용품으로 쓰는 것 등은 금지되어야 한다.

## 2. 통신장비의 사적 사용

Q. 나윤리 사원은 아내가 10일 가량 미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 미국과 시차로 인해 나윤리 사원이 근무하는 낮 시간 동안에만 부인과 통화가 가능했다. 처음에는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다가 전화비가 많이 나올 것 같아 회사 전화를 이용하여 아내와 통화를 했다. 자주 발생하는 일도 아니고 비용도 크지 않아서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윤리규정에 위반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A. 회사 전산장비는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특히 근무시간 중 회사업무와 관련이 없는 장시간 전화 등을 해서는 안 된다.

### 3. 업무용 차량 사용

Q. 나윤리 사원은 연휴 기간 동안 가족들과 교외에 다녀올 생각이었는데 차가 갑자기 고장나는 바람에 정비업체에 맡기게 되었다. 렌터카를 생각해 보았지만 여러 가지로 불편할 것 같아 평소에 사용하는 업무용 차량을 잠시 빌리기로 하고, 대신 유류비는 개인적으로 부담하려고 한다. 어차피 연휴 기간 동안에는 사용하지 않을 차이고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자신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리경영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A.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더라도 기업소유의 재산을 개인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 4. 업무용 항공 마일리지의 개인적 사용

- Q. 나윤리 사원은 업무 차 해외 출장이 많은 편이다. 이번 달에도 미국에 출장을 다녀와 무심코 항공 마일리지를 조회해 보니 그동안 마일리지가 많이 쌓여 일본 항공권 정도는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본인의 이름으로 쌓인 항공 마일리지이고, 회사에 말하지 않는 이상 모를 것 같아 그냥 사용할까 생각해 보았지만 왠지 마음이 편치가 않았다. 회사 출장을 통해 쌓인 항공 마일리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 A. 물론 이러한 사항이 윤리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보다는 회사차원에서 좋은 일에 쓸 수 있도록 생각해 보기를 권장 한다. 참고로 행자부 공무원은 공무로 얻은 항공마일리지를 사적으로 못쓰고 공무로만 쓰기로 했다고 한다.

## 5. 업무시간중 인터넷 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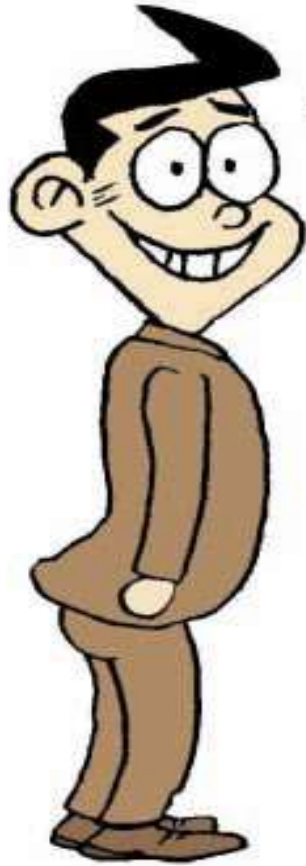
Q. 업무를 하다보면 가끔 업무에 집중이 안 되고 나른해지는 시간이 있다. 나 윤리 사원은 잠을 깨기 위해 커피를 마시기도 하지만 종종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인터넷으로 간단한 게임을 하기도 한다. 옆 자리에 앉은 동료도 회사 컴퓨터에 항상 주식거래 프로그램을 띄워놓고 회사업무를 처리하다가 간간이 시간이 나면 데이 트레이딩을 하곤 한다.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가끔씩 하는 이런 행동들도 문제가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A. 그런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컴퓨터 및 업무시간은 모두 회사의 공유물이다. 따라서 업무시간 중에 회사의 컴퓨터를 통해 게임을 하는 것은 공용물을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또한 그런 행위는 사무실의 업무 분위기를 해치는 것이기도 하다. 게임뿐만 아니라 인터넷 쇼핑을 한다거나 주식 투자를 하는 행위가 모두 마찬가지이다.



## 6. 윤리규범 준수 대상

- Q. 회사에는 정규직 사원 뿐 만 아니라 임시직, 파트타임 근무자 등 많은 형태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윤리규범의 적용이 되는 직원의 범위는 어디까지 이며 임시직으로 있는 직원이나 파견 근로자들도 윤리규범을 준수해야 할지 궁금하다
- A. 그렇다. 정식 직원이든 임시직이든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윤리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일부 기업에서는 거래업체 역시 당사의 윤리규범을 지키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거래 혹은 구매조건으로 볼 수 있고 사전에 응찰자에게 통보가 되므로 그 조건을 지킬 수 있는 업체만 응찰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되지 않는다



정규직원



파트타임  
근무자



파견근무자

회사를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들

## 7. 윤리규범 적용 대상

Q. 나윤리 사원은 윤리규범 선포와 관련한 자료를 읽던 중에 윤리규범 선포 이전에 자신이 한 행위가 위반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선포 이전에 한 행동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지만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A. 일반적으로 과거의 일을 특별히 문제 삼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 행위의 결과가 지금도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자발적으로 조속히 해소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 8. 고객에 대한 윤리 준수

Q. 윤리경영은 일반적으로 거래처와의 뇌물수수를 규제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고객에 대한 윤리경영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A. 고객에 대한 윤리규정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고객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
- 모든 판단 및 행동의 기준은 고객만족이라 할 수 있다.
-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고객윤리규정에는

- . 공정한 대우
  - . 고개 만족
  - . 약속준수
  - . 고객정보보호
  - . 허위사실 유포 금지
- 등등이 있습니다.



아휴, 얼굴도  
이쁜 게 말도  
참 잘하네!

## 9. 거래처 윤리 규범 위반 조치

Q. 나윤리 사원은 최근 새롭게 관계를 시작한 거래처에서 윤리규범을 위반 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 난감하다.

A. 거래처와 거래 시 기업의 공정거래에 관한 동의서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거래물량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할수 있다.

## · 내부신고제도/윤리적 기업문화

- ▶ 1. 내부 신고제도의 필요성
- ▶ 2. 내부신고 행위의 범위
- ▶ 3. 스스로의 일에 대한 신고
- ▶ 4. 자진 신고시 감면
- ▶ 5. 익명 제보
- ▶ 6. 허위 익명 제보
- ▶ 7. 상사의 비윤리적 언행
- ▶ 8. 성적 농담
- ▶ 9. 술자리 에티켓

## 1. 내부신고 제도의 필요성

Q. 나윤리 사원은 입사 초기 윤리교육 시간에 회사에 내부신고 제도가 시행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입사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실제로 내부신고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보인다. 웬지 내부신고 제도는 회사조직 내 구성원들 간의 화합과 단결을 해치고 임직원들 사이의 불신을 조장하는 제도인 것 같다. 이렇게 불필요한 제도를 왜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A. 그렇지 않다. 우리가 추구하는 신뢰와 협동은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윤리에 바탕을 둔 것이다.

부정과 불법을 용인하는 것이 신뢰와 협력으로 미화 되어서는안 된다.

내부제보는 잘못된 사람을 적발해서 벌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조직이 처한 위험을 미리 감지하여 더 큰 위기가 닥치기 전에 신속히 조치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내부제보를 통해서 회사는 조직 내 윤리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윤리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러므로 윤리경영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내부제보는 장려되어야 하고 내부제보자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 2. 내부신고 행위의 범위

Q. 나윤리 사원은 옆자리에 앉은 동료의 동생이 이번에 입사 지원하게 되었다면서 인사팀 직원에게 잘 봐달라며 선물을 하는 것을 보았다.

이러한 일은 가볍게 넘어가도 되는 일인 것 같기도 하고, 내부 신고의 대상이 되는 일인 것 같기도 하였다.

나윤리 사원은 내부 신고는 어떤 행위에 대해 제보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A. 일반적으로 윤리경영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 범죄행위,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회사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 업무와 관련된 상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지시행위에 대해 제보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밖에 윤리경영의 실천과 정착을 위해도움이 되는 어떠한 제안이나 제보도 가능하다.



### 3. 스스로의 일에 대한 신고

Q. 나윤리 사원은 친한 거래처로부터 돈 봉투를 건네받았다. 비윤리적인 줄알면서도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며칠 동안 마음에 걸려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다. 지금은 뇌물 받은 것을 후회하고 있다. 이럴 경우 본인이 자기 행위에 대해 제보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제보대상이 되는 비윤리적 행위를 하였거나, 비윤리적인 일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여 이득을 얻은 경우라도 본인이 뒤우치고 스스로 그 사실을 제보하였을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신고할 수 있다.

## 4. 자진 신고시 감면

Q. 나윤리 사원은 자신의 부정행위에 대해 스스로 제보를 하고, 처리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가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면 징계가 감면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지 궁금하다.

A. 그렇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윤리규범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함으로써 자신의 부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장과 윤리규범 책임자는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 5. 익명 제보

Q. 나윤리 사원은 김부패 차장이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김부패 차장이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는다는 사실은 공공연하게 소문이 나있던 터였다.

나윤리 사원은 고민을 하다가 향후 이러한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김부패 차장이 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 같아 이를 신고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자신이 모시는 직속상관이라 실명으로 신고 했다가 나중에 불이익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신경이 쓰였다.

이러한 경우 익명 으로도 제보하는 편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한지 모르겠다.

A. 제보자는 내부제보자보호규정에 의해 비밀보장과 신분보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익명으로 제보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익명으로 제보하게 될 경우에는 그 내용은 구체적이고 사실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 6. 허위 익명 제보

Q. 회사에서 인정받고 승승장구 하는 김원칙 부장. 하지만 딱 부러진 성격 탓에 김 부장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던 어느날 김원칙 부장이 신고센터에 제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나윤리 사원은 이와 같이 비방이나 음해를 위해 익명으로 근거 없는 사실을 윤리상담센터에 접수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대응하는지 궁금하다.

A. 익명으로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사실 확인이 가능한 자료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조사 자체를 하지 않는다. 피신고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 7. 상사의 비윤리적 언행

Q. 얼마 전 있었던 인사이동으로 옆 부서에 김버럭 부장이 새로 취임했다. 김버럭 부장은 사내에서 악명이 높은 부장이다. 부하 직원에게 빈번하게 화를 내며 인격모독적인 언행을 서슴 치 않는다.

나윤리 사원은 가끔 옆 부서에서 들려오는 김버럭 부장의 화내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업무에 집중이 되지 않는다.

김버럭 부장의 이러한 언행을 회사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다.

A. 상사로부터 비윤리적인 언행을 들었을 때에는 상사에게 직접 이야기 하는 편이 좋다.

하지만 당사자 간에 대화로 해결이 되지 않고, 상사가 달라지지 않은 경우에는 윤리담당부서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 8. 성적 농담

Q. 나윤리 사원의 동생 나순진 은 얼마 전 본인이 가고 싶어 하던 회사에 취업했다.

너무 기뻐하며 입사한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나순진 은 회사에 가기 싫다는 말을 꺼냈다.

나윤리 사원은 놀라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 동생의 옆자리에 앉은 남자직원이 성적 농담을 자주 건네며, 업무시간에 음란물을 계속 보고 있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나윤리 사원은 동생에게 무언가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싶지만 마땅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

A.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성희롱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먼저 거절의 의사를 밝히거나 하지 말도록 주의를 주고 필요한 경우 편지 등의 문서화된 기록을 남기며, 그럼에도 위와 같은 행동이 계속될 경우 성희롱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내부고발제도를 이용한다.

\* ‘성희롱 행위’ 이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남여고용평등법 및 동시행령, 시행규칙,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9. 술자리 에티켓

Q. 팀이 회식을 간 자리에서 남자직원들은 여직원에게 ‘여자가 따라 주어야 술맛이 난다’ 며 계속 술잔을 채워줄 것을 요구하곤 한다. 회식 분위기 상사나 윤리 사원도 장난스럽게 여직원에게 술잔을 채워달라고 했지만, 여직원의 표정이 좋지 않음을 느꼈다. 아무 뜻 없이 장난스럽게 건네는 이러한 말들도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A. 직장 동료들은 사심 없이 그런 행동을 했을지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불쾌함을 느꼈다면 그 행동은 성희롱에 해당된다. 행정자치부의 ‘남녀공무원 기본 에티켓’ 에 따르면 회식, 환영회 등에서 상사 옆에 좌석을 지정하거나 술 따르기 혹은 춤을 강요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성희롱 행위에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